#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. 행정·재무위워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6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6. 10. 17.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용우 징수과장)

## □ 제안이유

○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"한국지방세연구원"에 13,944천원을 출연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○ 근 거 :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

○ 출연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○ 출연금액 : 금13,944천원

○ 산출기초 :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,960,465천원의 1만분의 1.5

○ 출연시기 및 방법: 2017. 3월중 현금출연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지방재정법 제18조, 지방세기본법 제145조

나. 예산조치 : 13,944천원

다. 기 타

- 우리 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별	계	2016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	2011년
출연금	60,554	12,627	11,488	11,091	10,990	7,344	7,014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김광식)

-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 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
  -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,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등을 연구하고,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기관임
- 본 출연액 1,394만 4천원은
  -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근거하여
   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9억 6천 46만 5천원의 1만분의
    1.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며,

-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①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